

 해양수산부		보도자료		
		배포 일시	2019. 7. 19.(금) 총 4매(본문 2, 참고 2)	
담당 부서	어선정책팀	담당 자	• 팀장 김종모, 사무관 김도한, 주무관 서범석 • ☎ (044) 200-5505, 5523, 5524	
보도일시		2019년 7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더 쉽고, 더 편하게! 어선거래 누리집 새단장

-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 대폭 개선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*를 할 수 있도록 ‘어선거래 누리집(www.어선거래.kr)’을 개편하고,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.

* 어선 및 어선 관련설비를 사고파는 것

어선거래 누리집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온라인 어선거래 서비스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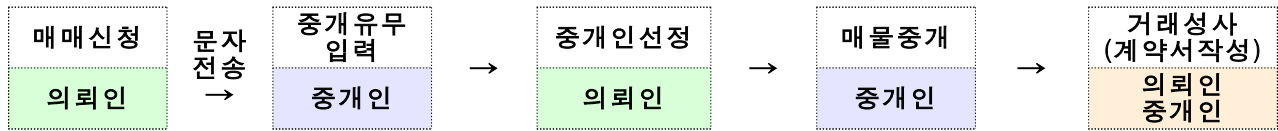
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,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, 어선중개업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,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‘사용자 중심의 정책개발’이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어업인, 어선중개업자 등 실제 사용자와 함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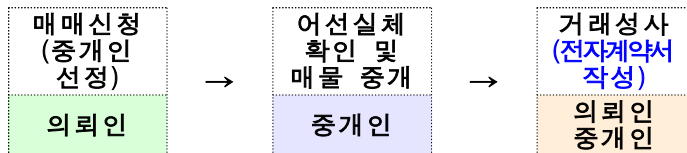
주요 개편사항을 살펴보면, 사용자, 중개업자,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있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,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
<어선거래절차 변경 비교>

○ (기존) 거래절차



○ (개편) 거래절차



또한,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형식을 마련하고,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이 외에, 모바일 앱도 어선거래 누리집과 동일하게 형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.

*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형식이 없어서 중개인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, 계약절차도 중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했음

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“새로워진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”이라며, “이를 통해 어선거래가 활성화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어선거래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·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044-330-2268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참고1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경과

□ (1단계/14년) 어선거래 정보 공개공유 및 매도·매수자간 거래 지원을 위한 중개 시스템 등 「어선거래 정보포탈」 구축('14.5월~12월)

* 주요제공정보 : 어선정보(톤수·저당권 등 어선원부 DB, 어업허가, 어선검사 이력 등), 어선매물현황, 시세정보(지역별·어선종류별 평균가격 산정·공개) 등

※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: WEB 서버, DB 서버, DBMS, O/S 도입

□ (2단계/15년) 모바일 웹 기반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

- 스마트 모바일 웹기반 어선거래 종합포털시스템 구축, 어선검사이력 확인서비스 시스템 기능개선, 수요자 맞춤형 단문 문자서비스(SMS) 시스템 구축, 관리자 기능 개선

※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: WAS(Web Application Server) 서버와 DB 서버를 분리 운영장비 도입, 리포팅 S/W 도입

□ (3단계/16년) 어선중개업 등록 시스템 및 중개업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('16.7월 ~ 12월)

- 중개업자 등록증, 교육이수증 및 각종 증서 발급 시스템, 유관기관 정보연계(행정처분, 불법어업이력, 검사이력 정보 제공 기능) 체계 구축

※ 소프트웨어 도입 : DB 암호화 S/W 도입

□ (4단계/17년) 어선중개업 교육평가 시스템 및 어선거래시스템 시범 운영('17.4월 ~ 10월)

- 어선실체 확인 서비스, 어선중개업 교육교제 및 평가문제 개발, 어선 거래시스템 디자인 개선, 각종 콘텐츠 제공 기능 구축

※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: OMR리더기 및 e-book S/W 도입

□ (5단계/18년) 어선설비 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평가시스템 이관

- 어선중개업 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(앱구축), 전자계약서 도입, 어선 중개업 교육 및 평가 자료 데이터 연계(교육신청자, 평가결과) 체계 구축, 어선거래시스템 모바일버전 기능 고도화, 어선거래절차 간소화

※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: 교육평가시스템 운영서버 및 백업 S/W 도입

참고2 어선시스템 이미지

매인 화면

전자계약서(서명)

어선매물

어선중개업 모바일 앱